

부속서 3
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

대한민국 양허표

대상 품목,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

1. 이 부속서는 제3.6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,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,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.
2.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.

가.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신선, 냉장 그리고 냉동 쇠고기 - HSK 세번 0201.10.0000, 0201.20.0000, 0201.30.0000, 0202.10.0000, 0202.20.0000 그리고 0202.30.0000

이행년도	9	10	11	12	13	14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67	476	486	496	506	516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0.0	30.0	30.0	24.0	24.0	24.0

이행년도	15	16	17
발동수준 (메트릭톤)	526	537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4.0	24.0	0

나.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0203.19.1000 그리고 0203.19.9000

이행년도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3	3	3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3.5	12.4	11.3	0

다. 아래에 포함된 사과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0808.10.0000

이행년도	9	10	11	12	13	14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8	49	50	51	52	53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3.8	33.8	33.8	27	27	27

이행년도	15	16	17	18	19	20
발동수준 (메트릭톤)	54	55	56	57	58	59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7	27	22.5	22.5	22.5	22.5

이행년도	21	22	23	24	25
발동수준 (메트릭톤)	61	62	63	64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2.5	22.5	22.5	22.5	0

발동수준은 모든 종류의 수입 사과의 총량과 관련된다.

이행 12년차와 그 이후 이행 24년차까지 각 연도에는,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.

라. 아래에 포함된 맥아 및 맥주맥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1003.00.1000 그리고 1107.10.0000

이행년도	9	10	11	12	13	14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,746	1,780	1,816	1,852	1,889	1,927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					
1003.00.1000	338.0	315.0	291.0	268.0	244.0	221.0
1107.10.0000	199.0	190.0	181.0	139.0	127.0	115.0

이행년도	15	16	17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,966	2,005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		
1003.00.1000	197.0	174.0	0
1107.10.0000	103.0	91.5	0

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, 부록 2-가-1의 제5항을 참조할 것.

마. 아래에 포함된 **감자전분**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1108.13.0000

이행년도	9	10	11	12	13	14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3	44	45	46	47	48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36.0	321.0	306.0	235.0	215.0	195.0

이행년도	15	16	17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9	50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75.0	155.0	0

바. 아래에 포함된 **인삼**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1211.20.2210, 1211.20.2220, 1211.20.2290,

1302.19.1210, 1302.19.1220 그리고 1302.19.1290

이행년도	9	10	11	12	13	14
발동수준 (메트릭톤)	20	21	21	21	22	22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754.3	754.3	754.3	754.3	754.3	754.3

이행년도	15	16	17	18	19	20
발동수준 (메트릭톤)	23	23	24	24	25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754.3	754.3	566.0	566.0	566.0	0

사. 아래에 포함된 **설탕**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1701.99.0000

이행년도	9	10	11	12	13	14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	4	4	4	4	5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50.0	50.0	50.0	50.0	50.0	50.0

이행년도	15	16	17	18	19	20
발동수준 (메트릭톤)	5	5	5	5	5	5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50.0	50.0	37.5	37.5	37.5	37.5

이행년도	21	2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5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7.5	0

아. 아래에 포함된 **주정**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2207.10.9010

이행년도	9	10	11	12	13	14
발동수준 (메트릭톤)	6	7	7	7	7	7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99.0	191.0	182.0	139.0	127.0	116.0

이행년도	15	16	17
발동수준 (메트릭톤)	7	7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04.0	91.8	0

자. 아래에 포함된 **텍스트린**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3505.10.4010, 3505.10.4090, 3505.10.5010 그리고
3505.10.5090

이행년도	9	10	11	12	13	14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35	444	452	461	471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60.0	244.0	228.0	152.0	131.0	0

3. 이 부속서의 목적상,

- 가. 이행 9년차란 2019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나. 이행 10년차란 2020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다. 이행 11년차란 202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라. 이행 12년차란 2022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마. 이행 13년차란 2023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바. 이행 14년차란 2024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사. 이행 15년차란 2025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아. 이행 16년차란 2026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자. 이행 17년차란 2027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차. 이행 18년차란 2028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카. 이행 19년차란 2029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타. 이행 20년차란 2030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파. 이행 21년차란 203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하. 이행 22년차란 2032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거. 이행 23년차란 2033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- 너. 이행 24년차란 2034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- 그리고,
- 더. 이행 25년차란 2035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